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302693(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9나302709(반소) 설계 및 감리비 청구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16. 선고 2018가소141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86,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0,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368,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반소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용역, 공사감리용역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울진군 C 외 3필지 지상에 10층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6. 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건축설계비	- 40,750,000원 - 에너지 절약계획서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상주감리비	- 39,250,000원 - 기간 10개월 / 공사기간 연장 시 개월별로 증액함 - 에너지준공검사비용 포함	
합계	80,000,000원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6. 12. 26. 착공하여 2018. 1. 31. 완료되었고, 2018. 3. 6. 울진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로 101,0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비 40,750,000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비에 대하여 10% 부

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상주감리를 조건으로 매월 약 400만원 상당의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수시감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주감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합계 101,060,000원에서 건축설계비 40,750,000원을 공제한 60,31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비용 40,750,000원 및 부가세 10%(4,0750,000원)을 합한 44,825,000원, 감리비용 56,912,500원(2016. 12. 26.부터 2018. 3. 6.까지 14.5개월 기간에 대한 비용) 및 부가세 10%(5,691,250원)을 합한 62,603,750원 등 합계 107,428,75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01,06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나머지 금액인 6,36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건축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으로서 그 대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그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사건 건축설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를 하

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주감리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설현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인 원고가 초기 공사현장에 감리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지 않아 피고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점, ② 피고 회사 사무실과 공사현장이 500미터 정도 거리로 가까운 거리였고, 피고는 수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정된 감리원 E 외에 대직으로 일부 감리활동을 한 D도 상주감리원 자격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건축법령 등에 따라 상주감리가 필요한 공사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감리보고서가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준공허가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주감리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감리업무 수행기간 및 감리비용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리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 21.(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날)을, 피고는 2018. 3.

6.(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각 주장하는데, 을 제2호증의 4(감리완료보고서)의 기재(공사감리기간의 종기 및 공사 완료일자를 2018. 1. 31.로 명시하고 있다) 및 제1심 법원의 울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감리기간의 종기는 2018. 1. 31.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리대금은 착공일인 2016. 12. 26.부터 감리기간 종기인 2018. 1.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56,823,870원[= 51,658,064원(= 1개월당 감리비 3,925,000원 $\times$ (13개월 + 5/31))(원 미만 버림) $\times$ 부가가치세 반영분 1.1]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장된 감리기간에 대하여는 견적서에 기재된 1개월당 440만 원(부가세 포함)의 감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서 10개월간 감리비를 3,92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특정한 후 기타 내용을 견적서에 준하도록 한 것인 이상 연장된 감리기간에 대하여도 1개월당 3,92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4) 원고가 납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4.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로 651,2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주 측이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이 검토하는 데 드는 필수적인 법정수수료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위 수수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니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점이 2016. 12. 26.인 이상,

그 이전인 2016. 7. 4.에 지출된 위 수수료(검토비용)를 감리비용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상 건축설계의 내용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포함'이라고 기재된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작성'한다는 의미로 판단될 따름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갑 1호증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인허가에 따른 각종 세금 및 경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견적내용 이외의 부분은 건축주가 부담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로서 합계 97,573,870원(= 설계비 40,750,000원 + 감리비 56,823,87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미 101,0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3,486,131원을 초과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초과 지급액 3,486,1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규

판사 정지영

판사 예혁준